

직원 위탁보육료 지원을 위한 예산전용 보고

원무과장 : 최은해 ☎570-8105 서무관리팀장 : 이은지 ☎8109 담당 : 성준오 ☎8118

□ 직원 위탁보육료 지원 사업개요

- 사업근거 :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
- 사업대상 : 어린이병원과 위탁보육계약 체결한 어린이집
- 사업내용 : 위탁계약 체결한 어린이집에 위탁보육료(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%) 직접 지원
- 사업비 : 79백만원

□ 예산전용 사유

- (포상금 증액 사유) 위탁보육료 지원 신청자가 전년 대비 증가하여 당초 예측 인원을 상회함에 따라, 법정 의무 준수를 위해 필수로 집행해야 하는 위탁보육료 지원금을 예산전용을 통해 증액함
- (공공운영비 감액 사유) 진단용 방사선 발생기(골밀도) 고장 빈도 감소에 따라 기기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전용에 활용함

□ 예산전용 내역 ('25. 12. 9.)

- 전용금액 : 1,541천원

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					예산액	변경요구액		변경 후 예산액
정책사업	단위사업	세부사업	편성목	통계목		증	감	
전문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고	어린이병원 진료수준 제고	어린이병원 직원 위탁보육료 지원	포상금	(303-01) 포상금	78,692	1,541	-	80,233
		어린이병원 진료서비스 수준관리	일반운영비	(201-02) 공공운영비	124,841	-	△1,541	123,300